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「철도차량 기술기준」

◇ 개정 이유

- 「철도차량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 시행지침」 제23조제6항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분류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, 「철도차량기술기준」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일반철도차량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행안전성 시험방법을 다른 차종과의 일관성과 특수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「철도차량 기술기준」 Part 1(총칙)의 “[별표 1] : 철도차량의 분류”에서 ‘중분류’를 ‘차종’으로 변경하는 등 분류제목과 용어 등 개정
 - ※ 관련 조문 : Part 1(총칙) [별표 1] : 철도차량의 분류
- 철도차량용 화재감지장치에 대하여 소방청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 외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까지 인정범위 확대
 - ※ 관련 조문 : Part 31, 41, 42, 44~47, 51~56 (3.2.4.5), Part 57 (3.2.3.5 화재 감지 및 경보)
- 특수차의 경우, 최초 형식시험 차량에 대해서도 단순화 방법을 적용하도록 일반철도차량기술기준(Part 41)의 주행안전성시험 적용범위 개정
 - ※ 관련 조문 : Part 41 (5.4.15 주행안전성시험 1) 적용범위)